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정 1993. 5. 25 조례 제1262호
 전면개정 1994. 2. 12 조례 제1290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63호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4호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 삭제 <2003. 10. 16>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3>

부칙 <1994. 2. 12 조례 제1290호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4. 1. 1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6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
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5. 3>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구분 | 전문의 | 일반의 |
|----|---------------|---------------|
| 갑지 | 월 909,000원 이하 |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등급별 근무연수별 | 가급 | 나급 |
|--------------|-----------------|---------------|
| 5년 이상 | 월 1,312,000원 이하 | 월 973,000원 이하 |
| 4년 이상 | 월 1,306,000원 이하 | 월 967,000원 이하 |
| 3년 이상 | 월 1,300,000원 이하 | 월 961,000원 이하 |
| 2년 이상 | 월 1,295,000원 이하 | 월 956,000원 이하 |
| 2년 미만 | 월 1,289,000원 이하 |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8. 5.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 지급대상 | 지급액 |
|---|------------|
| ①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 | 월 270,000원 |
|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 월 270,000원 |
|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 월 270,000원 |

